

안전점검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1억원 미만)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응모한 업체가 1개사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게 통보하며, 2개사 이상일 경우 다음 심사표에 의거하여 심사토록 한다.

1.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기준배점
가. 제안가격	◆ 제안가격 적정성	90
나. 신용도	◆ 수행기관 신용도	10
합 계		100

2. 평가항목별 기준

가. 제안가격 평가방법

$$\text{제안가격 평가점수} = 90 - 20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주]

- 1) | | 은 절대값 표시임.
- 2) 예정가격: (각 업체의 제안가격의 합) / 제안자 수
- 3)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4)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 비율이 88.25% 이상인 경우 평점은 85점으로 함
- 5) **제안가격 평가점수가 음수인 경우 낙찰하한가 미달로 대상에서 제외 (주4 우선적용)**

나. 신용도 평가방법

$$\text{신용도 평가점수} = \text{세부평가점수 합계}$$

평가 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1) 재정상태 건설도	3	○ 신용평가등급 평가기준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7	2.4	2.1	0
2) 점검·진단 평가결과	4	○ 용역사업자가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부실' 처분을 받은 용역에 대하여 건당 '미흡' 처분은 0.3점 감점,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매우 불량'은 1.0점 감점					
3)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3	○ 용역사업자가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책임기술인이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유효기간 만료일이 지정공고일인 경우에도 인정함)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지정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입찰 참여업체의 '점검·진단 평가결과' 및 '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는 안전전문기관 관할 지자체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한국기술사회 등에서 발급한 입찰참가제한, 영업(업무)정지 확인서로 평가한다.

3. 2개社 이상 동일점수 발생 시 선정 우선순위

가. 최저금액 제안업체 선정

나. 최저금액 까지 동일 시 사업부서 內 3인 이상 구성하여 제비뽑기